

1.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규 투자 확대 등을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목적으로 철도시설의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기준의 재검토 기한 연장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2년) 면제(안 제7조제2항)

- 1) 철도시설의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료의 분할 납부 이자를 2년('24~'25년) 간 면제하도록 단서 신설

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9조)

- 2)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 3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료의 분할 납부 이자는 면제한다.
제9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점용료 납부고지) ① (생략)</p> <p>②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말까지 연간 점용료를 산출하여 납부고지하며,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p> <p>③ · ④ (생략)</p> <p>제9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 (점용료 납부고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 .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료의 분할 납부 이자는 면제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 (재검토기한) ----- --- <u>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u> ----- <u>6월 30일</u>----- ----- ----- ----- .</p>